

중국의 개정 천연가스이용정책

I. 개요

천연가스는 고품질, 청정성, 안정성을 두루 갖춘 에너지 자원으로서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석탄의 절반 정도이며, 이산화유황의 배출량이 거의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세계에너지 소비의 약 1/4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천연가스의 소비는 에너지소비의 5% 가량이며 국제 평균수준인 24%보다 낮다. 석탄중심의 에너지 산업은 대기오염 및 지속적인 황사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천연가스자원 부존량은 전세계 총량의 2%로 추정되며, 개발 가능한 수치 역시 세계 평균 수준의 7%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연가스의 공급을 증가하기 위해 중국은 국내의 개발 투자뿐 아니라 국외의 자원수입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는 1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천연가스 개발에 관련

한 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라 2012년 10월3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새로운 「천연가스 이용정책」의 시행을 발표하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 정책¹⁾을 통해 천연가스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우선류, 허가류, 제한류, 금지류 등 4가지로 분류 하였다. 2007년에 발표되었던 「구 천연가스이용정책」과 비교해 볼 때, 우선류에 도농주민의 생활용 가스, 난방용 가스, 공공기관용 가스, 차량 및 선박용 가스 등의 항목을 포함시키면서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 시켰다.

II. 중국의 환경 에너지 정책 동향

중국의 환경 보호는 정부와 인민 모두에게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다. 1949년 국공내전의

1) 중국의 입법체계는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법규, 규정(規章) 등으로 나뉘는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서 공포한 규범적 성격의 결정, 규정, 방법 등도 법률에 속한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라고 부르며, ‘규정’, ‘방법’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서의 정책은 입법과 정부의 정책제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정부 또한 행정입법의 제정주체로서 그 정책은 입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정책은 직접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입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제로 사회에서 적용된다. 때문에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에너지 입법의 방향을 결정 짓는데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후 경제 발전을 위한 개발계획은 무분별한 삼림 벌채를 통해 초기의 사막화를 초래하면서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주어왔다.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계획은 1990년대 까지 경제의 급속한 발전의 초석을 닦았으나, 자원의 대량 채굴, 자연훼손, 오염 물질의 축적 등 환경에 대한 손상으로 인한 초봄 황사가 연례화 되었고 주요 도시의 대기 질은 해마다 악화 일로를 걸었다. 세계 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중국은 에너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으로서 이산화탄소의 최대 배출국의 지위 또한 겸유하고 있다.

이에 중국정부는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 촉진, 오염 물질 및 폐기물 발생의 감소,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 전략의 책정을 위한 각종 정책과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중국 통계연감에 의하면, 중국의 에너지 소비 총량은 표준 석탄 환산하면 31 억 톤으로 91%가 화석 연료 연소에 의한 것으로,²⁾ 에너지 정책의 기본은 절약, 재생 에너지 개발, 원자력 발전 및 해외의 화석 에너지 자원의 개발에 있다.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재생가능에너지법」은 재생 가능 에너지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한 낮은 대출을 제공하고, 신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탐사 장비 및 제품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 및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정한 것이다. 이 법률에 근거한 재정적인 인센티브 정책 도입 이후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04년 3%에서 2008년에는 약 9 %로 증가했다. 2009년 개정된 「재생가능에너지법」에 따르면 100 % 정부 보증의 고정가격매입제를 도입하고, 정부 조달에 의한 에너지 소비 효율 개선 정책을 통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상품을 우선구매³⁾ 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사이에서 균형적인 에너지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천연가스사용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며 고체연료사용에서 나오는 환경공해 감소를 위해 중국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서 천연가스가 기본적인 도시 가스원료임을 명시하고,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국가에너지 소비에 대한 천연가스의 비중을 2005년 2.8%에서 2010년 25.3%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세우고, 도시용 가정연료로 천연가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천연가스활용정책을 2007년 발표 시행하면서 2010년 말까지 천연가스 소비의 28.6%를 가정용연료로 사용할 것을 명시 하였다.

중국의 천연가스 수입량은 2005년 483만 톤에서 2009년 2350만 톤으로 증가되었으며, 2020년에는 수입량이 4,600만 톤에 달할 것으

2) 中国國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ee.htm>.

3) 정부가 어떤 종류의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너지 절약 제품만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절약 제품 정부 조달 목록 우선 강제 조달되는 에너지 절약 제품을 규정하여 년 2 회, 1 월과 7 월에 재정부와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가 발행 업데이트한다.

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매장량 265백 만m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해상 LNG의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제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과 LNG 사용을 위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한 천연가스 수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36조로 추정되는 석탄 메탄가스를 액화하여 사용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III. 중국 에너지 법제의 개요

1992년, 리우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이 명확히 제기된 후 중국정부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지속 가능한 개발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 조치로 삼게 되었고 따라서 이때로부터 시작하여 일련의 지속 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정책, 법률을 출범시켰다. 1992년 국무원은 중국 환경과 발전의 10대 대책과 조치를 제출하여 지역에 알맞도록 청정 에너지를 개발, 보급할 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1994년 국무원은 「중국21세기 아젠다-중국 21세기 인구·환경·발전백서」에서 에너지공업의 발전은 석탄을 기반으로 하고 전력을 중심으로 하여 수력발전을 대폭 발전시키고 석유, 천연가스를 적극 개발하며 원자력발전을

적절히 발전시키고, 지역에 알맞도록 신재생에너지 개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1995년 제정된 「전력법」⁴⁾ 총칙 제5조는 “국가는 재생가능에너지와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장려 한다.”고 규정하였고, 1997년에는 「에너지절약법」⁵⁾을 제정하여 제38조에서 “각급 정부는 지역에 알맞고, 여러 가지 에너지의 상호보완, 종합이용,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농촌에너지건설을 강화하며 메탄가스,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개발 및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2년에 제정된 「청정생산촉진법」⁵⁾ 제2조도 “청정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2005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이 통과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신에너지 개발이용이 법제의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이들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되는 전문적인 법률과 정책 외에도, 중국의 환경보호, 기타 에너지 법률과 정책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용을 강조하였는데 예를 들어 2005년 국무원의 「과학발전관실행·환경보호강화결정」에서 신에너지를 대폭 발전시키고 원자력발전(發電)을 적극 발전시키며, 청정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7년 수정 통과된 「에너지절약법」, 2008년 통과된 「순환경제촉진법」, 「전력감독관리조례」, 「에너지절약발전지도방법(시행)」 등이 있다.

4) 1995년 12월 28일 주석령 제60호 제정, 1996년 4월 1일 시행, 2009년 8월 27일 주석령 제18호 개정.

5) 2002년 6월 29일 주석령 제72호 제정, 2003년 1월 1일 시행, 2012년 2월 29일 주석령 제54호 개정.

2009년 개정「재생가능에너지법」제14조⁶⁾에서는 에너지 발전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시행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중국 에너지 법제의 일반적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다. 2011년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개정하여 연료전지와 혼합연료 등 신에너지발동기,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 신에너지발전 플랜트 또는 핵심설비 제조, 재생가능에너지 냉방에어컨설비 제조, 발전위주의 수력발전소 건설과 경영, 신에너지발전소의 건설과 경영, 신재생에너지 개발기술, 쓰레기처분장 메탄가스 발전장치 등에 외국인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였다.⁷⁾

IV. 개정 천연가스 이용정책의 주요쟁점

개정 「천연가스이용정책」의 핵심 쟁점은 도시 가스 서비스, 발전, 열병합 발전 및 분산 사용을 위해 가스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천연 가스 외에 세일 가스, 석탄층 메탄과 석탄 가스화 석탄 기반의 합성 가스를 포함시

키면서 이용 범위를 확장했으며, 특히 가격 합리화 및 가스 사용을 확대에 대한 보장 등 종합적인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첫째, 가스사용의 확대를 위하여 정책의 적용범위를 석탄 가스(기존의 액화 천연가스 포함)로부터 세일 가스, 석탄층 메탄과 석탄 기반의 합성 가스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제12차 5개년 천연가스 개발계획에 따라 2천3백억 m³의 천연 가스 소비를 확대하고 2015년 까지 2천 6백억 m³ 용량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⁸⁾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전통적 가스 사용을 확대하면서 2015년 까지 기존 천연가스를 1천억 m³ 생산하고 1천3백억 m³을 수입해야 한다. 한편, 신장 석탄가스화 석탄 기반의 합성 가스의 공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신장의 건설 계획에 따라 석탄가스화는 7백67 억 m³을 포함 1천5백억 m³을 넘어섰으며, 3백억 m³ 수송 용량의 가스 파이프라인이 2012년 8월 완공되었다.⁹⁾

두 번째 중요 쟁점은 새로운 정책이 4~12개의 범주로 천연 가스 사용을 나누고 실질적으

- 6)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은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 국무원 재정부문과 함께 전국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이용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내 도달해야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이 전부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정하고,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발전을 우선배치, 전액 구매하는 구체방법을 제정하며, 국무원 에너지주관부문과 국가전력감독관리기관이 연도 중 실현을 독촉한다.
- 7) 유향란, “중국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과정의 주요쟁점과 이해당사자 입장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6~77면.
- 8) 2012년 10월 25일에 2012년 중국 국가 가스 작업 회의에서, 국가 에너지 관리국 Liu Tienan은 내년 12 차 5 개년 천연 가스 개발 계획 및 우선순위 작업을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국 국가에너지관리 웹사이트를 참조(http://www.nea.gov.cn/2012-10/26/c_131932476.htm).
- 9) Yuanpei, Jia, “Accelerating Construction of Pipeline for Outward Transportation of coal-based syngas from Coal Gasification in Xinjiang”, China Energy News, November 5. 2012, p.14.

로 우선순위 범주를 추가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도시 가스 서비스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가스 열병합 발전과 석탄 광산 지역에서 발생을 제외한 가스 화력 발전과 70% 이상의 효율적 가스 사용에 우선 배분하여 안정적인 저장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수소 제조 이외의 화학 물질 생산을 위한 천연 가스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질서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천연가스 시장을 확대하고 가스

화력 발전과 부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열병합 발전 등 분산 가스 사용을 촉진하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을 지원한다.

이번 정책의 세 번째 쟁점은 천연가스의 가격 합리화와 포괄적인 지원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정부는 독립적으로 가스 사용의 우선순위 범주에 대한 토지 매입, 대출, 비용 회수 및 기타 조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책을 두고 있다.

〈표 1〉 천연가스 개발을 위한 12차 5개년 계획의 요지

제12차 5개년 석탄층 메탄 개발 및 이용 계획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국가에너지관리위원회 2011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90억m³에서 2015년 300억m³로 석탄층 메탄생산 확대, 석탄층 가스 가동률을 44 %에서 95 % 이상으로 올림 15억m³에서 160억m³로 표면 출력을 확장하고 80%~100%로 가동률을 올림 75억m³~140억m³로 메탄가스 회수를 확장하고 31%에서 60% 이상으로 가동률을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285만kw 이상으로 석탄층 메탄을 사용하는 화력 발전 용량을 확장. 매년 320만 이상의 가구가 석탄층 메탄을 사용하도록 높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이내 입증된 지질학적 매장량을 1조m³로 늘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2개의 주요 석탄층 메탄 산업화 기지를 완료하기 위한 5년 동안의 개발을 위해 동부 오르도스 분지, inshui 분지에 203억 위안, 37.8 억 위안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세일가스 자원 평가, 탐사 및 개발 영역의 완료, 개발 기술 및 2015년 주요 장치의 국내 생산의 향상을 실현 2016년 이후 개발을 위한 계획을 위해 세일가스 및 관련 산업정책 시스템에 대한 국가표준을 준비
세일가스 개발계획(2011~2015)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와 재정부, 국토자원부와 중국에너지관리부, 2012년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질 세일가스 6000억m³을 개발하고 5년 이내 가채 매장량 2000억m³을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년 65억m³의 세일가스 생산 목표를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까지 600억~1천억으로 산출량 확대

V. 개정 천연가스 이용정책의 주요내용¹⁰⁾

1. 천연가스이용정책의 제정 목적

「천연가스이용정책」은 천연가스하류이용영역의 발전을 규범, 인도, 격려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본 정책에서의 ‘천연가스’는 천연가스, 혈암가스(shale gas), 석탄층가스(coalbed gas), 석탄가스(coal gas), 수입파이프천연가스 및 LNG등을 지칭하며, 전국 천연가스이용관리에 관한 책임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에너지국 그리고 각 성(구, 시)발전개혁위원회 및 에너지국에 있다. 정책의 기본원칙은 천연가스 이용의 방향 및 영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내외 자원의 분배를 최적화하며, 천연가스이용순서를 각 지역의 차별화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을 실시하며, 자원이용의 실질적인 상황에 따라 천연가스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은 견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책의 목표는 과학발전 및 사회주의와 화해사회의 요구에 따라 에너지구조를 최적화하고 저탄소 경제를 발전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두 가지 자원과 시장을 총괄하고 천연가스가 에너지소비구조의 비율을 향상시키고, 천연가스소비구조를 최적화하고 이용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의 촉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천연가스이용정책의 이용영역과 순서

천연가스사용의 특징에 따라 천연가스는 도시가스, 공업가스, 천연가스발전(发电), 천연가스화공 및 기타 사용자로 구분하며, 천연가스 이용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천연가스사용자를 우선류, 협류, 제한류, 금지류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우선류

- 도시가스 :

- ① 성진(城镇)(특히, 대중大中도시)거주민
취사, 생활 온수 등 가스의 사용
- ② 공공서비스설비(공항, 정부기관, 직원식당, 유치원, 학교, 병원, 호텔, 식당, 백화점, 오피스텔, 기차역, 복지원, 양로원, 항구, 부두, 버스정류장) 등의 천연가스의 이용
- ③ 천연가스버스(특히 쌍연료 및 액화천연가스버스)는 도시버스, 택시, 물류배달버스, 승객용 버스, 환경청결버스 및 화물차 등 천연가스를 연료 사용하는 운송차량을 포함한다.
- ④ 집중식 채난(采暖)사용자(중심성 구, 개발구의 중심지역을 지칭한다)
- ⑤ 천연가스에어컨, 공업천연가스
- ⑥ 건축자재, 전기기계, 방직, 석화, 야금 등
공업영역 중에서 중단될 수 있는 사용자

[10) 百度百科, <http://wapbaike.baidu.com/view/9528386.htm?adapt=1&>.

- ⑦ 중단될 수 있는 사용자의 천연가스로 수소를 가공하는 프로젝트
- 기타 사용자 :
- ⑧ 천연가스 분부식 에너지프로젝트(종합적인 에너지 이용효율이 70% 이상이고, 가재생에너지의 종합적인 이용을 포함한다)
- ⑨ 천연가스로 연료를 사용되는 강, 호수의 수송선박(단일 및 이중 연료 천연가스연료 수송선 포함)
- ⑩ 성진 중에서 응급 및 조봉(调峰)기능을 가지고 있는 천연가스저장설비
- ⑪ 혈암가스발전 프로젝트

2) 혼가류

- 도시가스 :
- ① 분호식채난(分戶式采暖) 사용자
- 공업연료 :
- ② 건축자재, 전기기계, 방직, 석화, 야금 등 공업영역 중 천연가스로 오일 및 액화오일을 대체 진행하는 프로젝트
- ③ 건축자재, 전기기계, 방직, 석화, 야금 등 공업영역 중의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 ④ 건축자재, 전기기계, 방직, 석화, 야금 등 공업영역 중의 환경적 경제적인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석탄대체 천연가스 사용 프로젝트
- ⑤ 성진(특히 특대, 대형도시) 중심성, 구의 공업보일러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 사용

하는 프로젝트

- 천연가스발전 :
- ⑥ 첫 번째 종류 제12항, 넷 번째 종류 제1항을 제외한 천연가스발전 프로젝트
- 천연가스화학공업 :
- ⑦ 첫 번째 제7항을 제외한 천연가스 이용 수소 프로젝트
- 기타 사용자 :
- ⑧ 조봉(调峰) 및 저장으로 사용되는 소형 천연가스 액화설비

3) 제한류

- 천연가스화학공업 :
- ① 기존의 합성암모니아공장(ammonia factory)을 천연가스를 원료로 프로젝트를 확장
- ② 아세틸렌을 원료로 사용되고 염소, 메탄 및 기타 탄소 화학공업프로젝트
- ③ 새롭게 세워진 천연가스를 원료로 되는 질소비료 프로젝트

4) 금지류

- 천연가스발전 :
- ① 산시, 몽골, 산서, 안휘 등 13개 대형 석탄기지가 있는 지역 천연가스발전프로젝트 설립(혈암가스발전프로젝트 제외)
- 천연가스화학공업 :
- ② 천연가스를 원자재로 사용하고 메틸알코올의 생산 및 메틸알코올 생산 하류 제품

장치의 설립 및 확대

- ③ 석탄을 대체하여 천연가스로 메틸알코올을 생산하는 프로젝트

3. 천연가스이용정책의 보장을 위한 조치

국가발전위원회 및 국가에너지국은 각 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 및 공급의 균형,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천연가스의 이용, 조화로운 균형을 고려하며 자원, 운송, 시장의 효율적이고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각 성(구, 시) 발전개혁위원회 및 에너지국은 천연가스자원의 사용 및 지역관리조직건설의 현황에 따라 천연가스이용계획을 입안하고 공급 및 수요의 균형을 확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천연가스 이용우선 순서에 따라 우선류, 허가류의 순서를 고려하여 천연가스이용프로젝트를 촉진하고 또한 제한류 및 금지류 프로젝트의 심사 및 비준은 엄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천연가스사용구조를 최적화하고 사용증가량을 합리적으로 분배하여 연도별 사용분배계획을 세워야 한다.

천연가스의 이용순서에 따른 사용을 기반으로 선진적인 공예, 기술과 설비의 사용을 격려하고 천연가스이용의 낙후된 생산능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사용프로젝트를 촉진시킬 것이다.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천연가스를 대신 석탄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천연가스는 그 특성에 따라 종합적인 개발이용을 실시하며, 혈암가스

및 석탄충메탄의 편리한 사용 및 천연가스의 국가적 품질 표준조건에 알맞고 근접한 파이프라인과의 연결과 LNG, CNG의 가공 수출산업을 독려한다.

국가는 정책으로 시장구조를 인도하고 조봉저장설비의 건설을 통해 천연가스판매기업, 천연가스 기본설비운영기업 및 선진 천연가스경영기업과 함께 천연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고로 인한 공급중단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개혁을 추진하고 천연가스가격과 대체 가능한 에너지와의 가격 관계를 조정하며, 천연가스상하류가격 연동구조를 완화하며,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천연가스가격 및 중단 가능한 가격 등 차별화가격정책을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 천연가스의 합리적인 소비를 인도하고 천연가스 이용효율을 향상시키며 천연가스 무역구조의 쇄신을 지원 하여야 한다.

우선류 천연가스이용프로젝트에 대해 각 지역정부는 계획, 토지이용, 융자, 비용납부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며, 천연가스이용프로젝트에 관한 기술 및 설비의 자주화(自主化), 자동차 및 선박에 사용된 천연가스의 설비 및 건설을 지원하고, 지역정부에서 재정, 가격조정, 비용납부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4. 기타 천연가스이용정책 관련 규정

천연가스의 수요는 생산량에 따라 정하며,

새로운 천연가스프로젝트(우선류포함)의 심사는 가스의 내원을 확인하고 가스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당사자 상호간 계약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특히 국가에서 비준된 화학비료 프로젝트는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라 천연가스를 충분히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부족한 공급업체는 계약에 따른 이행의무와 함께 계속적인 공급량 증가 노력을 행하여야 한다.

VI. 중국 천연가스산업의 정책방향

중국 천연가스시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천연가스시장의 빠른 발전은 중국에너지구조의 최적화 및 에너지전략의 추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근년에 중국은 천연가스업체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천연가스 가격정책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2013년 6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천연가스가격조정의 통지」에 의하면 천연가스가격조정의 기본은 「시장지향에 따라 시장공급과 수요, 그리고 자원의 희소성을 반영하고, 대체 사용가능한 에너지의 가격조정구조를 설립하며 자원간의 가격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점차 천연가스 가격이 완전 시장화가 그 바탕이 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중국 천연가스가격의 조정 및 가격의 개혁은 시장기능의 방향에 따라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장구조 및 공급수요구조 등의 특수성 때문에 중국 천연가

스의 가격조정 및 가격탄력성 개혁은 실질적으로 「준시장화」 및 「시장진입 사용비준」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준시장화」는 천연가스의 가격조정 및 가격탄력성개혁이 계속 시장공급 및 수요의 관계와 자원의 희소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가격의 조정시스템을 구현하고 있고 천연가스 및 대체 사용이 가능한 에너지 가격관계가 가격결정의 중요 조건이 되고 있다. 「시장진입 비준추진」은 천연가스업체가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을 통해 천연가스의 시장경쟁성을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천연가스의 가격을 시장을 통한 경쟁에 맡기고자 하는 계획인 바, 최근 중국은 천연가스업체의 시장진입 비준의 개혁을 통해 혈암가스 등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 주체를 견인하고자 하고 있다. 다시말해 2011년 부터 중국은 국내산 해상천연가스, 혈암가스, 그리고 액화천연가스자원가격이 경쟁 시장을 통해 결정되도록 하면서, 국가는 파이프산업을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천연가스가격개혁의 방향은 새로운 사업주체를 통한 경쟁지향의 방향성을 띠고 있다.

2007년에서 2012년까지 중국은 천연가스수입량은 5년간 9.6배의 속도로 증가되었으며, 수입의존도는 2%에서 27%로 연간 5%씩 증가되었다. 천연가스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올해 7월 달 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중국 국내의 천연가스ex-work가격은 중앙아시아의 수입 천연가스 FOB가격 보다 1.5rmb/m³ 낮다. 이런 가격 차이는 중국내 민간자본에게 투

자 요인이 되지 못하며, 중국내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에너지 효율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반증한다. 천연가스의 지속적인 공급 및 사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국당국은 가격 구조의 혁신과 자원의 개발하는 것을 확대를 위한 중국에너지구조를 최적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¹¹⁾

VII. 맷음말

중국정부는 새로운 「천연가스이용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 각급 정부가 천연가스 이용,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종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시할 것이며, 특히 천연가스 차량과 선박의 이용을 장려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향후 계절적 요인과 지역적 요인 등을 고려한 가격차별화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의 「천연가스이용정책」은 Beijing 올림픽을 겨냥해 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우선 시한 한정적 공급 정책이었으나, 이번의 개정으로 중국내 생산 증가와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 LNG(액화천연가스) 조달에 따라 공급이 증가하고 이용분야가 확대되게 됐다.

기존의 석탄수요처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메탄올 플랜트 신증설 및 석탄으로의 원료전환은 금지되며 석탄생산지에서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최저 수요 발전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새로운 「천연가스이용정책」의 시행에 따라 천연가스차 업계가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이미 보급된 약 CNG(압축천연가스) 자동차 100만대의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유수요 및 아시아 석유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정책을 통해 개인 차량뿐만 아니라 공공버스, 택시, 화물적재차량 등 운송, 수송 천연가스차량(하이브리드 및 LNG 차량 포함)을 포함하고 있어 천연가스차량의 보급이 확대 됨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큰 성장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천연가스 원료사용의 확대 실시, 천연가스를 이용한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제조 등의 항목이 추가되어 관련 화학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완화 될 것이며, 향후 천연가스가격 개혁이 정식으로 시행 된다면 천연가스 업계가 더욱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진 용

(중앙대학교 박사과정)

11) Higashi, Nobuyuki, Natural Gas in China Market Evolution and Strategy, 2009, p.26.

참고문헌

〈국내문헌〉

유향란, “중국재생가능에너지법 입법과정의 주요쟁점과 이 해당사자 입장분석”,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외국문헌〉

Higashi, Nobuyuki, Natural Gas in China Market Evolution and Strategy, 2009.

Yuanpei, Jia, “Accelerating Construction of Pipeline for Outward Transportation of coal-based syngas from Coal Gasification in Xinjiang”, China Energy News, November 5. 2012.

〈인터넷자료〉

中国國家统计局, <http://www.stats.gov.cn/tjsj/ndsj/2009/indexee.htm>.

百度百科, <http://wapbaike.baidu.com/view/9528386.htm?adapt=1&>.

http://www.nea.gov.cn/2012-10/26/c_131932476.htm.